

훈련결과보고서

# 국적상실제도 연구

(개인훈련)

2020년 3월

법무부

(박소현)

# 목 차

○ 국외훈련 개요	
○ 훈련결과 보고서 요약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프랑스 국적법과 집행기관	
1. 연혁과 민법(Code civil)의 구조.....	5
2. 국적법 집행기관.....	10
III. 프랑스 국적법 상의 국적상실 제도	
1. 프랑스 국적상실 제도의 의의.....	15
2. 신고(Déclaration)에 의한 자발적 국적상실.....	20
3. 행정청의 결정(Décree)에 의한 국적상실.....	24
1. 자발적 국적상실	
2.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국적상실	
3. 국적박탈	
4. 국적 신고의 무효	
5. 행정청의 철회	
IV. 한국·프랑스 국적법 비교법적 고찰.....	37
V.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45

##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프랑스

2. 훈련기관명 : 파리카톨릭대학교

(INSTITUT CATHOLIQUE DE PARIS)

3. 훈련분야 : 국적상실제도 연구

4. 훈련기간 : 2019. 8. 29 ~ 2020. 2. 26.

## 훈련결과 보고서 요약

<b>훈련자</b>	박 소 현	<b>직 급</b>	출입국관리주사
<b>소속</b>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b>훈련국</b>	프랑스	<b>훈련기간</b>	2019.8.29.~2020.2.26.
<b>훈련기관</b>	파리카톨릭대학교	<b>훈련구분</b>	단기훈련(개인)
<b>훈련목적</b>	국적상실제도 연구	<b>보고서 매수</b>	55매
<b>내용요약</b>	<p>201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국적상실신고 현상과 현행 국적법상 상실신고 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프랑스 국적상실제도의 의미와 운영방식을 연구하여 대한민국 국적상실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p> <p>먼저 프랑스에서 외국인법이라 명칭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이 약 200여년 프랑스 이민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 프랑스 국적법의 구조와 집행기관을 소개한다. 프랑스 국적법의 법원은 골격법인 민법 외에도 프랑스 특유의 각종 명령,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적업무가 신고와 허가로 대별되어 있어 전자는 법무부가, 후자는 내무부가 집행하는 구조이다.(이원적 구조). 특히 내무부는 이민의 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2013년부터 이민청을 설립하여 외국인 전문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적의 취득과 상실 그리고 증명 등 제반 업무는 이민청 내 사회통합·국적국 국적과가 전담하고 있다.</p> <p>국적상실제도는 복수국적의 인정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프랑스는 유럽내 대표적인 복수국적 인정국가이며 따라서 국적상실이란 신청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포</p>		

기하는 국적이탈의 개념임을 밝히고, 프랑스 국적상실제도의 기저에 있는 국제법의 기본원리인 무국적방지의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자발적 상실)와 허가(비자발적 상실)의 요건, 담당기관, 결정절차 및 근거 법조항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비자발적 상실 중에서도 무효와 취소를 검토하면서 한국 국적법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혼인귀화와 일반귀화 요건을 다루었으며 더 나아가 양 국의 국적법 전반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적 단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상 국적상실신고 제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첫째 국적상실 신고 기간 제한과 의무불이행시 제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둘째 외국국적 취득일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적취득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대안으로서 최초여권이 아닌 현재 소지하는 여권으로 상실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향후 국적법의 기본방향으로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들 역시 헌법 제2조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바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일간지에 실린 기사<sup>1)</sup>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적을 이탈한 자가 총 3만 284명(상실자 23,791명, 이탈자 6,493명)으로, 이는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2만명이었던 수치에 비해 훨씬 급증되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세계화 시대 이민열풍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현행 국적상실신고 제도의 미비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이탈자 제외)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상실신고 기간규정이나 상실제한, 그리고 신고 해태 시 제재규정이 없는 관계로 국적업무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상실 시점(외국 국적 취득일)과 상실신고 접수일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큰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헌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에서 실제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른 국적의 변동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공시(公示)하고 있다<sup>2)</sup>. 즉,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별도 국적부가 없는 현행 체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등록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공신력을 갖거나 국적변동의 창설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정정절차를 통하여 일치시키고 있다.

1) 2018.11.24. 중앙일보 “한국탈출 국적포기자 3만명 돌파”

2) 안구환, 국적법상 국적의 선천적취득의 요건\_호적실무를 중심으로(2007)

오늘날 세계는 개인이 외국에서 행한 법률행위를 공유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원 국적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지 않은 채 (따라서 주민등록도 말소되지 않는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추정되어, 한국생활에 아무런 불편이나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틈새로 인하여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려는 미신고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비교적 최근에서야 상실신고를 강화하자는 여론<sup>3)</sup>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부분 선량한 개인들은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경우를 세 가지<sup>4)</sup>로 예정하고 있다. 국적의 자동 상실이란 별도의 행정처분이 매개되지 않고 법률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상태이다.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실을 모르고 학교도 다니고 취업도 하며 각종 의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체류기간 도과 문제도 동시에 떠안아야 한다.

급격한 신분변동 결과가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불이익과 불편은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는 것을 많이 목격하면서 과연 행정제도 개선과 정책홍보 강화를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혼련과제 문제 의식의 출발이었다.

물론 이 같은 사례는 법의 무지에서 나온 최악의 상황이다. 실제 민원현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는 유형의 대부분은 최근 외국인 체류가 강화되면서 재외동포(F-4) 거소신고·연장 그리고 취업비자(E 계열) 등록·연장 시 담당공

<sup>3)</sup> 2018. 8. 29. 국민신문고 “한국국적 상실신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고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sup>4)</sup>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 되는 경우는, 첫째 외국국적 자진 취득 시 한국적이 상실되는 경우(동법 제15조), 둘째 국적취득자가 1년 이내 외국 국적 미포기시(동법 제10조 제3항), 셋째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동법 제14조의2, 제4항)이다.

무원에게 인지되어 국적상실 신고할 것을 안내받는 경우이다. 그 다음 유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적회복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교포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들이 회복절차 진행 중 우선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상실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상실 시기와 상실신고 시점의 간극이 제일 크다.

행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개인의 법 무지(無知)에 비해 상당히 큰 고충을 초래하는 현행 국적상실 신고제에 대하여 상실신고 기간제한 및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실효성 담보방안 등 전반을 재검토하여 국민과 재외동포와 함께 가는 제도와 절차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귀화절차가 적극적으로 취득되는 신분변동 방법임에 비해 상실제도는 귀화절차의 결과적·반사적 효과를 반영하는 측면이라 하더라도 결국 동전의 양면이며 각 개인에게 기본 신분변동을 초래하는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목적

국적상실제도는 1930년 국적법저축의 일부분제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 헤이그 협약)에서 “각 개인이 1개의 국적을 가져야 하며 또 한 개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이익이다” 라고 밝힌 바와 같이, 단일 국적주의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경로로 복수국적 상태를 용인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각 개인이 1개만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단일 국적주의 명제는 국가들의 실무관행 결여로 국제규범화 되지 않았고, 일국의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국가정책이 되었을 뿐이다.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sup>5)</sup>에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귀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복수국적을 감수하거나 무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과적으로는 복수국적이 국적부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2000 년도만 하더라도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가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6)</sup>. 독일과 네델란드를 제외한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의 유럽 내 국가들과 러시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현재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연합(EU) 회원국과의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국적법과 달리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자가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독일 국적이 자동 상실 되지 않는다.

특히 프랑스는 복수국적 인정에 있어서 유럽 내 가장 유연한 국가이다.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국적상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프랑스 국적상실제도와 절차, 그리고 운영방식을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프랑스 국적상실제도를 통하여 프랑스 국적법을 개관하여 비교법적 시각에서 대한민국 국적상실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심화되고 있는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ce: 이주하는 인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국적법이 과거 국가의 소속원으로서 그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을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국적법의 이민정책적 접근으로 ‘헌법 제2조의 국민’ 이 대한민국 사회에 발전적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

5)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은 과거 헤이그협약 제1조와 2조가 선언한 고전적인 원칙에서 시작하여 전후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는, 국적에 관한 국제적 총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적결정에 한 주권국가의 권한, 국적의 권리와 무국적 방지, 각종 차별금지, 귀화의 요건인 거주기간, 국적상실의 사유, 국적포기의 자유, 국적에 한 절차, 복수국적, 그에 수반되는 병역의무, 국가승계(state successtion)로부터 발생하는 국적의 문제,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총 32 개 조항의 약이다.

6) Thomas Faist , 「Transnationalization on International Immigration : Implication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 Ethnical and Racial Studies, 2000, p.210

## 1. 프랑스 국적법의 연혁과 구조

### 가. 프랑스 국적법의 연혁

프랑스 외국인 법(Droit des étrangers)은 크게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출입국관리법 (CESEDA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보호와 강제퇴거 및 난민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적법은 민법(Code civil) 국적 조항을 위주로 한 여러 법령 등에서 프랑스인이 되는 요건과 효과들을 규율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신과 타자(他者)를 명확히 구분 짓는 외국인 법을 가지고 있다. 대개 이 법은 한 국가의 타자, 즉 외국인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민에 대해 우호적 혹은 배타적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제노포피아에 압도당하는 등 그 사회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정책도구가 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이민역사를 그대로 반영한 프랑스 국적법이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국적법은 역사적으로, 특히 혁명기간까지도 속지주의(droit du sol: jus soli)가 우세하였다. 현재의 혈통주의를 앞세운 속인주의(droit du sang : jus sanguinis)는 나폴레옹 민법전이 등장한 1800년대 이후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적법을 한국과 같은 혈통주의 국가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항상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국적취득의 길이 열려 있었으며, 곧바로 도래한 제국주의 프랑스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이중 속지주의(double jus soli)라는 원칙으로 반영되어 현재까지도 프랑스인을 규정하는

양대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속지주의는 속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하고 정책화하기 쉬운 변수<sup>7)</sup>여서 언제나 정책결정자들에게 선호되어 왔다. 그 결과 프랑스는 속지주의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보충적 출생지주의(principes complémentaires de jus soli)와 최근 2016년에는 프랑스인 형제·자매들에게까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국적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속지주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약 200여년의 이민 역사를 가진 프랑스 국적법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국적법의 주요 변천사>

<표 1>

연 도	법 른	주요 내용
1804	Code civ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인주의(jus sanguinis)를 기반으로 부계 혈통에 따라 프랑스 국적부여 시작</li> <li>▪ 그러나 이민자의 자녀가 성년이 되면 국적취득할 수 있는 기회 부여</li> </ul>
1889	Loi sur la nationalit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부여와 취득에 대한 요건 정의 시작 (이로 인하여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li> <li>▪ 이중속지주의(un double droit du sol) 도입</li> </ul>
1927	Loi du 10 aout 1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 이외 별도의 법률들이 국적조항을 형성</li> </ul>
1945	Ord. du 19 octobre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국적법 제정(총 151 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에서 출생한 이민자 자녀들을 별도의 절차없이 18세가 도달시 신고(déclaration)만으로 국적부여</li> </ul> </li> <li>▪ 이민국 창설 (1945. 11. 2.)</li> </ul>
1993	Loi n° 93-933 du 22 juillet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국적법 폐지 후 국적관련 조항을 민법에 재편입하여 현재까지 유지</li> </ul>

7) Élise Ralser, 「Le droit de la nationalité et des étrangers en schémas」(2017)에 의하면, 속지주의에 대한 기준으로 ① 자발적 의사 ② 영토 내 출생 ③ 영토 내 거주 ④ 군대에서의 협력을 들고 있다.

1998	la loi 《Guigou》 du mars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일 위원회(la commission Weil), 속지주의 확장 노력</li> <li>▪ 외국적 부모 하 프랑스 태생인 자는 만 11세부터 5년 이상 프랑스에서 상시 거주하였다면 만 18세 도달 시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 부여. 단, 13세부터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신고 절차로 가능하게 함</li> </ul>
2006	Loi n° 2006-911 du 24 juillet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회복절차 중 국적취득 행사 참가 요건 추가</li> </ul>
2011	Loi n° 2011-672 du 16 juin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국적취득 시 프랑스어 습득의 요건 추가</li> </ul>
2012	Décret n° 2012-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시민의 권리와 의무헌장 발표</li> </ul>
2015	Loi n° 2015-1776 du 28 décembre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인 직계후손의 국적취득 요건 추가</li> </ul>
2016	Loi n° 2016-274 du 7 mars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지주의 강화</li> <li>▪ 프랑스인의 형제·자매의 국적취득 요건 추가: 신고(déclaration)에 의한 국적취득</li> </ul>

## 나. 프랑스 국적법의 구조

프랑스 국적법은 한국과 같이 별도의 국적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Code civil)에 규율되어 있다. 민법을 근간으로, 의회의 각종 법률(lois), 의회의 승인과 행정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오르도낭스(ordonnance), 행정부 자체 결정인 데크레(décret), 그리고 각종 지침(circulaires)들이 국적법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법들은 프랑스가 외국과 체결한 각종 조약·국제관습법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유럽공동체(EU)의 결정 및 지침들<sup>8)</sup>에 구속되어 있다.

<sup>8)</sup> 국적에 관한 대표적인 유럽공동체 내 협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협약이 있다.

- ① 1963년 다중 국적의 감소에 관한 유럽위원회 협약(Convention du Conseil de l'Europe sur la réduction des cas de pluralité de nationalités du 6 mai 1963) 협약
- ②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조약(Convention européenne sur la nationalité du 6 novembre 1997)

민법(Code civil) 상 프랑스 국적법의 기본구조는 아래와 같다.

〈프랑스 국적법의 기본 구조〉<sup>9)</sup>

<표 2>

민법전 제1권 인(人) 제1권 제1-2절 : 프랑스 국적 Code civil, Livre 1er : Des personnes Titre 1er bis :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Chapitre I er : Disposition générales	제1장 일반규정(제17조 ~ 제17-12조)
Chapitre II :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d'origine Section 1 Des français par filiation Section 2 Des français par la naissance en France Section 3 Dispositions commune	제2장 태생적 프랑스 국적  1섹션: 혈통관계에 따른 프랑스인 (제18조 ~ 제18조 1항)  2섹션: 프랑스 출생에 의한 프랑스인 (제19조 ~ 제19조 4항)  3섹션: 공통규정 (제20조 ~ 제20조 5항)
Chapitre III :  De l'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Section 1 : Des modes d'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Paragraphe 1 : 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à raison de la filiation Paragraphe 2 : 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à raison du mariage Paragraphe 3 : 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à raison de la naissance et de la résidence en France Paragraphe 4 : 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par déclaration de nationalité	제3장 프랑스 국적의 취득  1섹션 : 프랑스 국적의 취득방식 제1항 혈통관계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 (제21조)  제2항 혼인에 의한 프랑스 국적취득 (제21조 1항 ~ 제21조 6항)  제3항 프랑스 출생 및 거주에 따른 프랑스 국적취득 (제21조 7항 ~ 제 21조 11항)  제4항 국적신고에 의한 프랑스 국적취득 (제21조 12항 ~ 제21조 14항)

<sup>9)</sup> 민지원 | 권채리, 「외국 국적자의 국내출생자녀에 관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IOM MRTC Policy Report Series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No. 2018 - 05, p.29~31 <표3-1>

<p>Paragraphe 5 : 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par décision de l'autorité publique</p> <p>Paragraphe 6 : Dispositions communes à certains modes d'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p> <p>Paragraphe 7 : De la cérémonie d'accueil dans la citoyenneté française</p> <p>Section 2 : Des effets de l'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p>	<p>제5항 행정청의 결정에 따른 프랑스 국적취득 (제21조 14-1항 ~ 제21조 25-1항)</p> <p>제6항 프랑스 국적취득에 관한 일부 방식에 있어서의 공통규정 (제21조 26항 ~ 제21조 27-1항)</p> <p>제7항 프랑스 시민권 부여에 있어서의 의식(절차) (제21조 28항 ~ 제21조 29항)</p> <p>2섹션 : 프랑스 국적 취득의 효과 (제 22조 ~ 제22조 3항)</p>
<p>Chapitre IV :</p> <p>De la perte, de la déchéance et de la réintégration dans la nationalité française</p> <p>Section 1 : De la pert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p> <p>Section 2 : De la réintégration dans la nationalité française</p> <p>Section 3 : De la déchéanc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p>	<p>제4장 프랑스 국적의 상실, 박탈, 회복</p> <p>1섹션 프랑스 국적 상실 (제23조 ~ 제23조 9항)</p> <p>2섹션 프랑스 국적 회복 (제24조 ~ 제24조 제3항)</p> <p>3섹션 프랑스 국적 박탈 (제25조 ~ 제25조 제1항)</p>
<p>Chapitre V :</p> <p>Des actes relatifs à l'acquisition ou à la perte de la nationalité</p> <p>Section 1 : Des déclarations de nationalité</p> <p>Section 2 : Des décisions administratives</p> <p>Section 3 : Des mentions sur les registres de l'état civil</p>	<p>제5장 프랑스 국적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련한 행위</p> <p>1섹션 국적의 선언 (제26조 ~ 제26조 5항)</p> <p>2섹션 행정결정(제27조 ~ 제27조 3항)</p> <p>3섹션 호적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28조 ~ 제28조 1항)</p>
<p>Chapitre VI :</p> <p>Du contentieux de la nationalité</p> <p>Section 1 : De la compétence des tribunaux judiciaires et de la procédure devant ces tribunaux</p>	<p>제6장 국적에 관한 소송</p> <p>1섹션 사법법원의 권한 및 절차 (제29조 ~ 제29조 5항)</p>

Section 2 : De la preuve de la nationalité devant les tribunaux judiciaires	2섹션 사법법원에서 국적의 증빙 (제30조 ~ 제30조 4항)
Section 3 : Des certificats de nationalité française	3섹션 프랑스 국적의 증서 (제31조 ~ 제31조 3항)
Chapitre VII : Des effets sur la nationalité française des transferts de souveraineté relatifs à certains territoires	제7장 특정 영토 관련한 주권이양의 프랑스 국적의 효과
Chapitre VIII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x collectivités d'outre-mer régies par l'article 74 de la Constitution et à la Nouvelle-Calédonie	제8장 : 헌법 제74조에 정하는 해외령 뉴칼레도니아 관련 규정 (제33조 ~ 제33조 2항)

## 2. 프랑스 국적법 집행기관

### 가. 특징 : 법무부와 내무부의 이원적 구조

프랑스 국적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크게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와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로 대별된다.<sup>10)</sup>

### 나. 법무부 산하 국적담당 부서 : 그레프(Grefte)

법무부는 프랑스 사법역사의 산물로, 프랑스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사법제도는 일반소송과 행정소송 관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각급 법원에는 검찰국(parquet)이 설치되어 있어 법원과 독립된 검찰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사(juge), 검사(procureur)란 업무 내용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는 용어이고, 사법관(magistrat)이라는 단일한 용어로 지칭된다<sup>11)</sup>.

<sup>10)</sup> Fabienne Jault-Seseke, 「Droit de la nationalité et des étrangers」(2015) p.93

<sup>11)</sup> 신은선, 「프랑스의 법원행정관리기구 연구」 p.121~123, 刑事法の 新動向. 통권11호 (2007년 12월), 대검찰청 2007.12.01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일반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행정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 즉 한국처럼 대법원의 산하기관으로서의 법원행정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는 사법부의 한 축을 구성하며 법원 및 검찰의 예산, 회계, 설비 등을 담당하면서 재판업무를 보조한다. 사법부의 다른 축, 가장 본질적인 독립된 사법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최고사법관회의이다.

이런 맥락에서 법무부는 법원행정 업무, 즉 신청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내 국적담당 부서(Grefte du TI: Tribunaux d'Instance)<sup>12)</sup>에서 국적증명 업무와 국적취득·국적상실에 필요한 신고를 수리하며 기타 국적관련 분쟁을 담당한다. 다만 파리의 경우, 별도의 국적담당 부서를 설치하여(Pol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de Paris) 업무를 집중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원 내 위치한다. 국적관련 각종 신고는 해외주재 프랑스 영사관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 **다. 내무부 산하 이민청 사회통합·국적국**

### **1) 내무부 (Ministere de l'interieur)**

프랑스의 이민 소관부처는 당대의 현실적 필요와 인식에 따라 계속 변동해 오다가 2010년부터 내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과거 이민 문제를 경제·사회 이슈로 다루었던 시대에는 사회문제와 통합부(Affaires sociales et intégration), 혹은 고용과 연대부(Emploi et la solidarité)에서 담당하였고, 비교적 최근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 당선 이후 2007년에는 이민·통합·국가정체성 및 개발연대부(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e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developpement solidaire)에서 담당해 왔다.<sup>13)</sup>

내무부는 국적에 관한 업무 중 일반귀화 및 회복 그리고 행정청의 결정에

---

<sup>12)</sup> Greffe는 [www.service-public.fr](http://www.service-public.fr)에서 'un service d'un tribunal composé de fonctionnaires qui assistent les magistrats dans leur miss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사법관들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의 담당부서라 할 것이다.

<sup>13)</sup> 박선희 / 「프랑스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과 안보화」 P.68/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1호(2018년)

의한 국적상실 등을 담당한다. 다만, 혼인이나 프랑스인 직계후손 및 프랑스인 형제·자매로서 국적 취득을 하려는 자는 신고에 의한 절차로 법원 내 그레프(Greffe)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의 진정성 및 허위사실 신고 등에 대한 조사(한국의 실태조사에 해당) 결과에 대한 판단은 내무부 이민청에서 하기 때문에 첫단계(신청접수)부터 그 절차를 내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3년 두 개의 법령(décret. n° 2013-795, 2013-796)에 의하여 내무부 산하 지방 경시청(Préfecture)에 업무가 위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시청에서 국적신청 관련 접수와 안내, 면접심사, 심사의견 보고, 국적취득 행사(한국의 국적수여식에 해당) 등 제반 국적업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2) 프랑스 이민청 (Direction general des etrangers en France)

국적법 집행기관의 이원적 구조 중 이 보고서가 주목하고 있는 「행정청의 결정(décret)에 의한 국적취득·회복·상실」 등을 관할하는 부서는 내무부 소속의 이민청 (Direction général des étrangers en France; DGEF)이다.



<그림 1>

프랑스 이민청 리플렛 표지  
: 이민청 조직도와 각 부서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민청은 2013. 8. 12. 데크레(décret)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5. 12월 개정) 이민과 난민의 세계적인 급증현상, 잦은 외국인 테러로 인한 사회재통합의 필요성, 우수인재와 노동력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과거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통합과 통제의 균형이 중요해진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2015년부터 현재 2020년 1월까지 앙뜨완 몰리나 이민청장 (M. Pierre-Antoine MOLINA)이 이민청을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정책홍보 방식은 이민청 홈페이지 ([www.immigration.interieur.gouv.fr](http://www.immigration.interieur.gouv.fr))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홈페이지에는 이민청의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동시에 정

책 홍보와 각종 통계 등의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이 외 프랑스 전체 공공 기관 소개와 민원을 위한 범정부 포털사이트([www.service-public.fr](http://www.service-public.fr))가 있으며, 일선 내무부 산하 경시청(préfecture)에서도 민원 편의를 위한 안내 사이트([www.prefecturedepolice.interieur.gouv.fr](http://www.prefecturedepolice.interieur.gouv.fr))를 제공,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우리의 민원 24 시라 할 만한 service-public.fr. 사이트의 국적 민원안내 방식이 흥미롭다. 평면적으로 국적업무 진행절차 안내 화면 혹은 순서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원인은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계속 제시되는 화면을 클릭하며 단계적으로 정보를 얻는다. 예를 들어, 그 출발은 민원인이 외국 출생인지 혹은 프랑스 내 출생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현재 프랑스에서 체류하는지 혹은 외국에서 체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민원인은 이런 단계를 여러 번 거쳐 서서히 어떤 경로를 통해 국적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근거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불허 시 구제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더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료 통화 서비스(1분당 0.15 유로)도 제공하고 있다.

### 3) 이민청 내 사회통합 · 국적국(DAAEN) 국적과

이민청은 크게 기능별로 이민심사국<sup>14)</sup>, 사회통합 · 국적국<sup>15)</sup>, 난민국<sup>16)</sup>, 연구부(통계포함)<sup>17)</sup>, 국제협력부<sup>18)</sup>, 인사예산부<sup>19)</sup> 총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심사국 산하에는 비자과, 체류과, 조사과가 있으며 사회통합 · 국적국에는 사회통합과, 국적과가 그리고 난민국에는 난민과 무국적 등을 처리하는 팀이 운영되고 있다.

이민청에는 현재 약 500 여명의 직원들이 파리와 르와르 아틀란티크

14) La direction de l'immigration (DIMM)

15) La direction de l'accueil, de l'accompagnement des étrangers et de la nationalité (DAAEN)

16) La direction de l'asile (DA)

17) Le département des statistiques, des études et de la documentation (DSED)

18) Le service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et européennes (SA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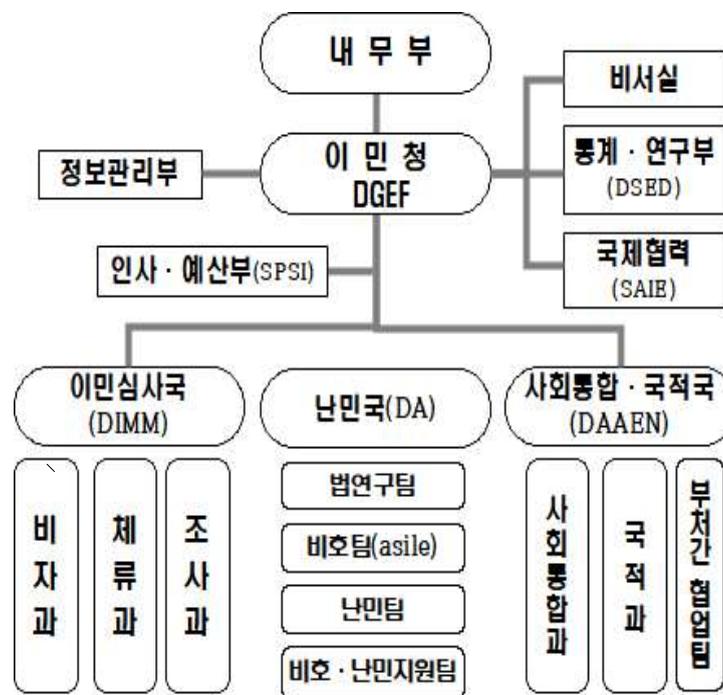
19) Le service du pilotage et des systèmes d'information (SPSI)

(Loire-Atlantique)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통합·국적국은 르와르 아틀란티크 지방 낭뜨시 레제(Rezé)에 소재하고 있다.

프랑스 이민청 리플렛<sup>20)</sup>에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사회통합·국적국의 국적과는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법을 집행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침들을 마련한다. 국적과는 전국적으로 산재된 총 30여개 국적담당 플랫폼을 총괄하며, 행정청의 결정(décret)에 의한 국적취득 및 상실, 혼인의 진정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 판단 등에 있어 통일적인 법 적용과 해석을 위해 노력하고, 국적관련 각 부처 간 의견조율과 협력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적 불허결정과 관련되는 개인의 분쟁절차와 프랑스 국적에 관한 증명의 요구에도 대응한다.

프랑스 이민청을 간략히 재구성<sup>21)</sup>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20) Plaquette\_DGEF\_mars 2017-2

21) organigramme\_DGEF\_paysage\_juin 2019

## 1. 프랑스 국적상실제도의 의미

### 가. 현 실태 : 복수국적 인정과 국적상실의 의미

프랑스는 유럽 내 대표적인 복수국적 인정국가이다. 프랑스는 여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언제나, 일관적으로 복수국적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유지하였다고 자체 평가한다.<sup>22)</sup> 프랑스는 선천적으로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만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단일 국적주의를 취하는 우리 국적법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출생 시 프랑스 이외 외국 국적을 부여받은 개인은 우리 국적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적선택의무(국적법 제 12 조)를 거칠 필요가 없이, 즉 어떠한 행정절차 없이도 여러 개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천적 복수국적자들도 여전히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다. 우리 국적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동법 제 10 조제 1 항)와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자동상실(동법 제 15 조)의 경우가 프랑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자는 프랑스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이다.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프랑스 외 다른 본국에 거주할 경우 프랑스의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으며, 역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프랑스 외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프랑스 내무부 역시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어떠한

<sup>22)</sup> Étienne Patout는 그의 저서 「LA NATIONALITÉ EN DÉCLIN」(2014) 3장 복수국적의 문제 (*La double nationalité en question*)에서 "À la différence d'autres États, la France a toujours été très tolérante en matière de plurinationalité"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2016년 프랑스 잡지에 실린 복수국적 관련 기사<sup>23)</sup>에 의하면 당시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거의 절반을 복수국적자로 보고 있으며, 그 숫자는 약 750,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국립통계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민자 부모를 둔 프랑스 태생 자녀들 중 3분의 1이 복수국적자이며, 부와 모 모두 북아프리카 출신인 경우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들은 40%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렇게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프랑스 국적법에서 국적상실의 의미는 한국 국적법에서 의미하는 국적 상실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의 국적상실은 ① 법률규정에 의한 자동 상실 ② 국적 이탈 ③ 귀화·회복 허가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 ④ 국적상실결정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프랑스 국적법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국적의 자동 상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 즉, 프랑스에서의 국적상실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통해 그 국적을 상실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두 번째 유형, 국적이탈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랑스 복수국적자들은 프랑스 국적만 보유할 수도 있고 외국 국적만 보유할 수 있다. 혹은 양자 모두 보유가 가능하다. 국적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국적상실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와 제재적(sanction)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나. 프랑스 국적상실제도의 근간 : 무국적자 방지의 원칙**

### **1) 의 의**

복수국적을 인정하여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은 프랑스 국적법에서도 일관되게 구속받는 원칙이 있다. 복수국적과 국적상실제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프랑스는 복수국적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국적자 방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그 결과, 프랑스

<sup>23)</sup> <http://archive.francesoir.fr/actualite/politique/double-nationalite-mode-d-emploi-106518>. (2016.1.12.)

국적상실제도의 전반적인 흐름은 무국적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구축되어 있으며, 국적상실의 대상은 복수국적자로 한정하고 있다.

## 2) 무국적자 방지 원칙의 주요 내용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국적을 임의적으로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국적을 가질 권리(right to a nationality)와 국적을 변경할 권리(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가 천명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내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고 무국적자 감소를 위하여 여러 후속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주제에 대한 출발점이자 대표적인 합의가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sup>24)</sup>과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sup>25)</sup>이다. 전자가 무국적자에 대한 개념<sup>26)</sup>을 명확히 하여 이들의 지위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향상시키려고 하였다면, 후자는 실제로 각국이 취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양자 협약의 대상자는 많은 논란 속에서 법률상의 무국적자(de jure stateless person)<sup>27)</sup>들로 한정하였다.

특히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에서 나타난 국적상실과 박탈의 주요한 규범이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1997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에서도 재확인된 바, 프랑스는 그 본질적 내용을 국적법에 담고 있다.

24) 「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프랑스는 1955년 1월 12일 가입하여 1960년 3월 8일 비준하였다.

25)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프랑스는 1962년 5월 31일 서명을 하였으나, 현재 비준 되어있지 않다.

26) 동 협약 제1조 (Articles 1)에서 무국적자란, “일국의 법 적용에 있어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who is not considered as a national by any State under the operation of its law)라고 정의한다.

27) 사실상의 무국적자(de facto stateless person)는 국적국 밖에 체류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할 의지가 없는 자들로(the person outside of the country of their nationality who are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themselves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의 유형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1961년 협약의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는 국적상실과 이탈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국적상실과 이탈은 외국 국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귀화자의 경우이다. 만약 그가 상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귀화한 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는 그의 국적을 상실시킬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귀화자는 해당 국가의 법 적용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적용에 의해 국적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적상실은 법원이나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청문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협약은 제 8 조와 제 9 조에서 누구도 국적박탈로 인해 무국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 국적이 허위나 사기로 취득되었을 경우
- 중대한 국익에 대한 심각히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금지된 표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등 충성에 대한 의무에 상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개인이 타국에 공식적인 충성맹세를 하거나 해당국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는 경우
- 귀화자가 해당 국가와의 실효적인 관계(the effective link)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공식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유지한다는 명백한 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 3) 프랑스 무국적인정 절차

프랑스는 무국적자 방지를 위한 원칙을 국적법에서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무국적 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무국적인정절차는 난민국 오프라(OFPRA: 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에서 담당하고 있다. 무국적인정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나 신청자가 원하면 난민인정 절차와 통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 UNHCR 에서도 무국적감소와 방지를 위한 좋은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신청인이 원하는 언어로 면접을 보며, 면접 시 변호사나 특정 단체의 대표를 대동할 수 있다. 면접이 끝나고 심사결정 시 오프라는 신청인이 국적을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가의 정보를 취합하고 최종 결정을 한다. 그리고 무국적자임이 증명되면 무국적자들을 위한 별도의 체류자격(*la carte de séjour pluriannuelle bénéficiaire du statut d'apatride / 4년 복수비자*)이 부여되고, 신청인은 무국적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국적자는 해당국의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직업을 가질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여행증명서를 받을 권리(*documented*), 보다 더 수월한 절차로 귀화절차를 진행 받을 권리, 특별한 권리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무국적자들의 경우 대개 난민의 지위와 비교되는데, 1951년 난민법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의 법칙(*non-refoulement*)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16년 오프라 통계에 의하면 286명이 무국적자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무국적 인정절차를 신청하는 자의 출생 지역은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지역이 제일 많고(27%), 그 다음은 구 러시아 연방국(15%), 이탈리아(6%), 모리타니아(5%), 미얀마(5%), 기타(42%) 순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인정하는 무국적 인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여러 국적법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무국적자
- 특정국가에서 출생하였으나 그 국가가 호적에 등재하지 않는 자
- 국경의 변경(*transferts de souveraineté*)으로 발생한 무국적자
- 국적의 박탈(*déchéance de nationalité*)로 발생한 무국적자
- 엄격한 속인주의 혹은 속지주의 적용에 의해 발생한 무국적자

## 2. 신고(Declaration)에 의한 자발적 국적이탈

### 가. 의 의

국적상실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의 실효성과 관련되어 있다. 실효성과 관련되어 1955년 노테범 사건<sup>28)</sup>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유명한 판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에서 국적이란, 「국가와 개인 간의 진정하고 유효한 관계(the genuine and effective link)를 바탕으로 한 법적 유대관계<sup>29)</sup>」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해당국 입장에서 국적상실의 효과는 법의 실효성의 부재(la perte pour absence d'effectivité)를 초래하는 것이다.

### 나. 신고 대상

외국국적을 보유한 프랑스 국민은 법원에 신고하여 국적이탈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서의 프랑스 국민이란 프랑스 민법(Code civil)에 의하여 프랑스 국적을 선천적으로 부여(attribution) 받은 자들 중에서도 외국 국적도 보유한 복수 국적자들을 의미한다. 귀화(naturalisation)나 회복(réintégration)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시 프랑스 국적을 이탈하려는 자는 법원의 신고가 아니라 내무부장관 명의로 이탈 허가(décret)를 받아야 한다.

### 다. 신고기관 및 절차

프랑스 국민이 자발적으로 프랑스 국적 이탈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 내 국적 담당부서(Grefte de tribunaux competents en matiere de nationalité 혹은 파리의 경우 Pol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de Paris)와 해

<sup>28)</sup> 2차 세계 대전 후 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의 이중국적에 관한 최초 판결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을 주장하는 과테말라 국적의 노테범의 이중국적간 충돌 사건에서 과테말라 국적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새로 취득한 리히텐슈타인 국적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노테범이 취득한 리히텐슈타인 국적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단지 분쟁당사국인 과테말라에서만 그 유효성을 부인함으로써 이중국적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sup>29)</sup>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에서는 국적에 대한 정의를 “국가와 개인간의 법적 유대”라고만 정의하고 있다.(Article2: Definition\_Nationality means the legal bond between a person and a state and does not indicate the person's ethnic origin) 이는 ‘유효한 국적’의 개념이 ‘우월한 국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효한 국적’의 개념은 최근 유럽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국적 세일 혹은 판매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다시금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2>  
프랑스 국적신고 담당 지방법원

외주재 프랑스 영사관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인의 서류가 제출되면 해당기관은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고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담당부서장(Greffier)이 6개월 기간 안에 수리·불수리 결정을 한다. 그러나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도 결정이 없으면 그 신고는 수리(décision favorable)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리가 되면, 호적부에 기재(l'enregistrement)가 된다. 자발적인 외국 국

적을 취득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신고의 효력 발생일자는 신고일이다. 만약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décision défavorable, refus d'enregistrement), 신청인은 그 결과 통지 후 6개월 이내 신청인 주소지 관할 상급법원 (TGI: Tribunaux de Grand Instanc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라. 요 건

### 1)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sup>30)</sup>

#### (가) 대 상

원래의 프랑스인(Français d'origine)이다. 원래의 프랑스인이란, 적어도 부모 중 한명이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을 부여(attribution)받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프랑스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국적이 불분명<sup>31)</sup>하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그리고 외국 국적 부모의 자로서 부모의 국적국의 법률에 의하여 어떠한 국적도 부여하지 않는<sup>32)</sup> 프

30) 프랑스 민법 제 23조, 상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적의 성인자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민법전 제26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프랑스 국적을 상실한다.

31) 프랑스 민법 제19조, 부모가 불분명하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프랑스 국민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미성년자인 동안 이 아이와 외국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설정되거나 부모의 국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당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국적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32) 프랑스 민법 제19-1조, 다음 각 호의 자는 프랑스 국민이다.

① 무국적 부모의 자로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 ② 외국국적 부모의 자로서 프랑스에서 태어나 부모의 국적국의 법률에 의하여 어떠한 국적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부모 중 일방이 취득한 외국의 국적법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국적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랑스 태생인 경우에도 프랑스 국적이 부여되어 원래의 프랑스인으로 분류된다.

#### (나) 요건과 효과

외국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성인에게만 해당된다. 특히 35 세 미만 프랑스 남성은 병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예비군 훈련일(JDC: La journée Défense et Citoyenneté)에 참가한 자이어야만 한다.<sup>33)</sup> 이탈신고 기간<sup>34)</sup>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접수한 날로부터 외국적 취득 후 1년 내이다. 국적이탈 효과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발생한다.

#### (다) 제출 서류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이 진행하는 국적상실 신고와 상응하는 부분으로, 이하 제출서류를 소개해 본다.

- 출생증명서(Extrait de l'acte de naissance)
- 프랑스 국적증명서(Certificat de nationalité française) 혹은 시민권 (Actes de l'état civil)과 같이 프랑스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국적 취득일자와 외국 국적법 적용법률 확인가능한 국적증명서 혹은 외국국적 취득신청 접수증
- 외국에 상시 거주한다는 증명서 (Justificatifs concernant la résidence habituelle à l'étranger)
- 35 세 미만의 남성인 경우 예비군 훈련(JDC: La journée Défense et Citoyenneté) 참가 또는 그것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국방부 증빙서류
-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후 더 요구할 수 있다.

## 2) 외국국적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sup>35)</sup>

<sup>33)</sup> 프랑스 민법 제 23-2조, 35세 미만의 프랑스 국민은 병역법전(Code du service national) 제2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전 제23조와 제23-1조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sup>34)</sup> 프랑스 민법 제 23-1조, 국적 이탈을 위한 신청서면은 외국 국적 취득 신청접수일로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늦어도 당사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sup>35)</sup> 프랑스 민법 제23-5조,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프랑스 배우자는 그가 배우자의 국적을 혼인생활의 상시적 거소가 외국이라는 조건으로 민법전 제2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그러나 35 세 미만의 프랑스 국적자는 병역법전 제2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혼인에 의해 배우자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청인은 외국에 상시 거주하고 그 혼인생활이 유지된다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신고를 통한 프랑스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제한이 없다. 국적이탈 대부분이 신고기간의 제한이 있고, 또 그 기간을 초과하면 행정청의 결정(décret) 대상이 되는 경우와 비교가 된다.

### 3) 복수국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sup>36)</sup>

(가) 부모 중 한명이 프랑스 국적이고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sup>37)38)</sup>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을 부여받아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프랑스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능하다. 신고 기간은 17 세 중반부터 19 세까지 가능하며 신고일자에 이탈 효과가 발생한다.

(나)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 출생이고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sup>39)40)</sup>

이중 속지주의(double jus soli)에 의해 프랑스 국적이 부여된 경우이다.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예를 들면, 부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나 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또 부의 국적국이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라면 그 자녀는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신고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17 세 중반부터 19 세까지 가능하며 신고일자에 이탈 효과가 발생한다.

36) 프랑스 민법 제23-3조, 민법전 제18-1조와 제19-4조 및 제2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포기 권리를 행사한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 국적을 상실한다.

37) 프랑스 민법 제18조,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프랑스 국민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는 프랑스 국민이다.

38) 프랑스 민법 제18-1조,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만이 프랑스 국민이고 프랑스 영토 내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성년에 도달하기 6월 전과 성년에 도달한 후 12월 이내에 프랑스 국적을 이탈할 권리를 가진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외국국적의 부 또는 모나 무국적자인 부 또는 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는 이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39) 프랑스 민법 제19-3조, 부모 중 일방이 적어도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자녀로서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는 프랑스 국민이다.

40) 프랑스 민법 제19-4조, 부모 중 일방만이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 프랑스 국민이 된 자는 그가 성년에 도달하기 6월 전과 성년에 도달한 후 12월내에 프랑스 국적을 이탈할 권리를 가진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부모 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이 권리는 소멸된다.

(다) 부 또는 모와 프랑스 국적을 수반 취득한 경우<sup>41)</sup>

프랑스는 18 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자녀가 프랑스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로써 이탈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17 세 중반부터 19 세까지 가능하며 신고일자에 이탈 효과가 발생한다.

### 3. 행정청의 결정(decree)에 의한 국적상실

#### 가. 의 의

행정청의 결정(décret)에 의한 국적상실은 개인의 국적상실 결정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행정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국적법은 이 경우를 총 5 가지로 예정하고 있다. 먼저, 행정청이 수리 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적이탈과 개인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국적상실과 박탈, 그리고 신청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실행되는 철회(retraite)가 있다. 신고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이를 무효(annulation)로 별도 구분하고 있다. 이는 편의상 함께 설명해 본다.

#### 나. 국적 이탈 : La liberation des liens d' allegance

##### 1) 의 의

프랑스 이민청 산하 사회통합 · 국적과는 민법 제23-4조<sup>42)</sup>에 의거한 1993년 법률(la loi n° 93-933 du juillet 1993)과 같은 해 마련된 데크레(décret n° 93-1362 du 30 décembre 1993)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사자의 명시적인 신청 혹은 요청에 의해(à sa demande) 국적 이탈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미성년자 포함 모든 프랑스 복수국적자들이 행정청에 국적이탈을 요구

41) 프랑스 민법 제22-3조, 민법전 제22-1조에 의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프랑스에서 출생하지 않은 아동은 성년에 도달하기 전 6월과 성년에 도달한 때로부터 12월 내에 프랑스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아동은 민법전 제26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

42) 프랑스 민법 제23-4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국민은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의 청구와 프랑스 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이 허가는 데크레에 의한다.

하는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이를 검토 후 데크레(décret)로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이 절차를 특히 프랑스어로 리베라시옹 데 리앵 달레지앙스(la libération des liens d'allégeance envers la France: 직역하면 프랑스에 대한 충성관계의 해방이라고 할 것이다) 혹은 'congé de nationalité' (국적이탈)라고 한다.

## 2) 대 상

(가) 국적이탈 신고대상자이나 정해진 신고기간을 도과한 자

실질적으로 이 경우가 프랑스 국적이탈을 제일 많이 하는 경로이다. 앞서 언급한 국적이탈 신고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을 도과한 자들이 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많은 경우 해외영사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일반귀화 혹은 혼인귀화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

(다)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법정대리인 필요)

## 3) 접수방식 및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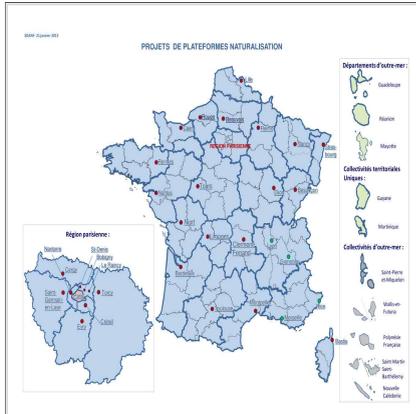
프랑스의 국적접수 방식은 대개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국적 안내서에는 우편 접수 시 모든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반송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국적이탈 신고서 1 부
- 국적이탈 상세이유서 (les motif: 형식은 구애받지 않으며, 특히 신청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영사관이나 기타 권한 있는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프랑스 혹은 외국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사진과 서명 확인)
- 프랑스 출생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 개월이 넘지 않아야 함)
- 법원에서 발급받은 프랑스 국적증명서 혹은 국적이 프랑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프랑스 귀화서류 등)
- 혹시 필요시 프랑스인과의 혼인증명서 (Eventuellement, une copie intégrale et originale de l'acte de mariage français)
- 외국국적 증명서, 혹시 그것이 없다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영사의 증명서:attestation consulaire, 여권사본  
혹은 외국신분증명서)

- 외국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다는 서류

#### 4) 신고기관 및 심사결정 과정



<그림 3> 프랑스 국적플랫폼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 국적담당 플랫폼  
혹은 해외영사부에서 한다. 신청인이 접수  
를 완료하면 주소지 관할 국적접수 플랫폼  
에서 심사 의견을 붙여 내무부 이민청 국  
적과로 이송하게 되고, 그곳에서 내무부장  
관 명의로 최종 결정을 한다.

이 때 이민청 국적과는 법적요건이 충족되  
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신청 이유도 심  
사하게 된다. 심사 대상은 프랑스에서 조  
세회피 여부, 또는 과거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해외  
에서의 상시적인 거주 여부 (대개 최소 10년)도 고려한다.

#### 5) 결정의 종류

##### (가) 허가의 경우(décision favorable)

허가 후 국적이탈 결정은 관보고시 되며, 신청인은 허가 결정통지서를 받  
게 된다. 그리고 결정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국적이탈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효과는 소급되지 않으며 수반취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2년  
과 2014년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총 156건이 접수되어 약 90%의 허가율  
을 보이고 있다<sup>43)</sup>.

##### (나) 불허의 경우(décision défavorable)

불허 사유는 반드시 통지되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Ce refus doit  
etre notifiée et motivé).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낭뜨시 소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행정적 구제절차(un recours administratif)  
를 거쳐야 한다.

43) 이민청 홈페이지, la libération des liens d' allégeance envers la France (2020.1.18. 검색)

## 다. 외국 시민으로 행동할 때 혹은 프랑스 국익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한 국적상실 결정 : La perte pour comportement indigne ou deloyal

### 1) 의 의

복수국적을 보유한 프랑스인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결정(décret)에 의하여 그의 국적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이 우선적으로 발동하여 개인의 반국가적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를 데크레로 실행한 적은 없으며, 다소 이론적인 내용으로 행동억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44)</sup>

### 2) 요 건

- (가) 프랑스 내에서 외국국적 시민으로 행동할 때<sup>45)</sup>
- (나) 프랑스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실행할 때

### 3) 절 차

즉각 그러한 행동을 중지하라는 명령(L'injonction)<sup>46)</sup>이 서면으로 통지되며,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관보고시 한다. 법정 기간 내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부는 국참사원의 의견(avis du Conseil d'État)에 따라 국적상실을 결정한다. 이 때 행정부와 국참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고 수반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up>44)</sup> Fabienne Jault-Seseke는 그의 저서 「Droit de la nationalité et des étrangers」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행하는 제재적 성격의 국적상실은 다소 이론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결정(décret)을 찾을 수 없다. 그 것들은 단지 하면 안 되는 덕목(une vertu dissuasive)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sup>45)</sup> 프랑스 민법 제23-7조, 사실상 외국 국적자와 같은 행위를 한 프랑스 국민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데크레에 의하여 프랑스 국민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언될 수 있다.

<sup>46)</sup> 프랑스 민법 제23-8조, 외국의 군대나 외국의 공공서비스 기관 또는 프랑스가 가입하지 않은 국제기구에 종사하거나 협력을 제공하는 자가 프랑스 정부에 의하여 정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지 않거나 협력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프랑스 국적을 상실한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기간은 2주 이내일 수 없고 2달을 초과할 수 없음) 안에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참사원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의 프랑스 국적이 상실되었음이 선언된다. 국참사원의 의견이 비우호적인 경우, 위의 조치는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의 데크레로 행해질 수 있다.

## 라. 국적박탈(Decheance)

### 1) 연 혁

프랑스에서 국적박탈(déchéance)의 역사는 1848년 노예제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1848년 4월 27일 데크레에 의하면 이 조항은 국적 취득자와 선천적 프랑스인에게도 해당되었으나,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적 취득자에게로만 한정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비시(Vichy)정권 시기(1940-1944) 반유대주의와 반외국인 정서를 실행하는 정책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당시 약 15,000명이 프랑스 국적을 박탈당하였으며, 그 중 40%가 유대인이다. 따라서 국적박탈 정책은 국제정세나 국내경제가 어려울 때 민족주의 감정이 팽배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1945년 10월 제정된 국적법(code de la nationalité)은 국적박탈을 쉽게 하지 못하기 위해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État)의 의견을 조건부 규정으로 두도록 했으며 그 후로 국적박탈 사례는 감소된다.<sup>47)</sup>

이후 1998년 3월 16일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 무국적자들 역시 국적박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박탈대상이 국적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자(une personne français d'origine) 대(對) 무국적자·국적취득자들 간의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평등권에 대한 위헌소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차별이 프랑스 헌법이 선언하는 평등의 원칙에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ne fut pas considérée comme portant atteinte au principe d'égalité) 확인<sup>48)</sup>한 바 있기도 하다.

### 2) 주요 내용

국적박탈의 요건은 프랑스 민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적 박탈에 의한 결과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 프랑스 국민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참사원의 의견을 들은 후 데크

47) 박선희/프랑스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과 안보화 (securitization),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1호 2018년 4월 30일 pp. 67~90

48) Cons. const., 16, Juillet 1996, n°96-377DC et 23, Janvier 2015, n°2014-439QPC

례에 의하여 프랑스 국적이 박탈당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혹은 테러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형법전 제4권 제3장 제2절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병역법전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외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랑스 국민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으며 프랑스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과거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국적박탈은 당사자가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해진 범법행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선고 역시 국적 취득 일로부터 10년 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2006년 법률(la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개정 이후 제 25조 제 1항, 즉 기본적인 국익침해나 테러행위를 구성하는 범법행위만은 범법행위와 선고기간이 국적취득일로부터 15년으로 연장되었다.

기본 절차는 제재로 인한 국적상실과 동일하다. 박탈 결정은 국참사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며 그 효과는 소급되지 않는다. 이 조항 역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례가 미미하다. 1973년부터 1986년까지 3번의 국적박탈(1982, 1983, 1984)이 있었고, 최근 10여년 동안 2002년 1건, 2006년 5건 총 6건의 국적박탈이 시행되었을 뿐이다.

## 마. 국적신고의 무효(Annulation)

### 1) 의 의

법원에 신고한(déclaration) 국적 취득 혹은 상실 내용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은 수리 무효를 선언한다. 여기서의 중대한 하자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거짓(mensonge)·허위(fraude)가 있을 때이다. 전자는 신고 수리 후 2년 안에, 그리고 후자의 경우 거짓이나 허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이를 판명하여 결정(décision) 한다. 그

효과는 소급되어 처음부터 무효, 즉 프랑스 국적을 처음부터 갖지 아니한 효과를 가진다. 무효 결정에 불복 시에는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적상실에서 언급한 5 가지 사항의 신고 이외 신고를 통한 국적이 취득되는 경우, 프랑스인의 배우자와 프랑스인 직계후손, 그리고 프랑스인 형제·자매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대 상

### (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 결정

#### (i)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 요건

프랑스인의 배우자는 혼인으로 바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국적을 취득한다. 혼인귀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요건으로도 귀화가 가능하다. 신청인은 현재 합법적 상태에서 국적 신고 당시 최소 4년(après un délai de 4 ans à compter du mariage) 이상 프랑스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합법적이라 함은 임시 체류허가증(document provisoire)이나 체류자격(titre séjour)을 소지한 자이고 현재 강제퇴거(l'expulsion) 혹은 입국금지(ITF: 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e) 상태여서는 아니 된다. 이 혼인생활은 우리 식 표현에 의하면 “혼인의 진정성”(la communauté de vie affective et matérielle)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물질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일정 수준이상 프랑스어 구사 능력(une connaissance suffisante de la langue française)을 가진 자여야 하는데, 프랑스 어학능력 평가 결과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면접과정에서 프랑스어 능력 확인을 위한 개별 면접심사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 취득자에게 해당되는 공통규정<sup>49)</sup>, 즉 국가의 근

<sup>49)</sup> 프랑스 민법 제21-17조 ①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혹은 테러행위에 해당하는 중죄 및 기타 범죄를 범하였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이든 집행유예 없이 6월 이상의 금고형(emprisonnement) 선고받은 자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 ② 추방 혹은 집행이 완결되지 않은 입국금지 명령이 있을 후 이것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철회되거나 폐지된 바 없는 자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 ③ 프랑스에서의 거주가 프랑스 내에서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률 및 협약(convention)에 위반하는 자의

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중죄(crimes) 및 기타 범죄(delits), 테러행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자이거나 집행유예 없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여서는 아니 된다.

<표 4> 프랑스 혼인귀화의 요건



(ii) 국적취득 결정 과정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은 신고에 의한 절차로 법원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프랑스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프랑스 내무부 이민청 국적과는 신청인의 프랑스 사회 동화상태, 범법사항, 혹은 언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국참사원 결정(décree)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은 행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접수 단계부터 경시청이 접수하고 면접심사와 실태조사를 한 후 심사의견을 내무부 국적과에 이송한다.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동반하여 면접을 하고 난 후 접수증을 교부받는데, 행정청은 서류가 일선 경시청에서 이송된 후 1년 안에 결정을 해야 하며, 이의제기는 접수증 교부 후 약 2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프랑스인 직계후손<sup>50)</sup>으로 취득한 국적 결정

프랑스인의 직계후손으로, 65세 이상인 자가 최소 25년간 프랑스에 거주한 경우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이 역시 접수 단계부터 경시청이 접수하고 면접심사와 실태조사를 한 후 심사의견을 내무부 국적과에 이송한다.

경우에도 같다.

<sup>50)</sup> 프랑스 민법 제21-13-1조, 65세 이상인 자로서 최소 25년 이상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프랑스인의 직계후손인 자는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다) 프랑스인 형제·자매<sup>51)</sup>로 취득한 국적 결정

비교적 최근에(2016년) 새로이 도입한 국적취득 유형이다.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형제·자매가 있고, 신청인이 6살 이후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상시거주한 성인(à leur majorité)으로 프랑스 의무교육을 수료한 자라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형제·자매는 외국인 부모를 둔 프랑스 태생인 자로,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영역을 확장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라) 18세 미만 미성년자<sup>52)</sup>의 국적신청 결정

프랑스는 외국 국적 부모를 둔 프랑스 태생 자녀에게 만 13세 부터 국적취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만 13세 이상부터 16세까지는 아동의 동의를 얻어 법정대리인이, 그리고 16세 이상부터 18세까지는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하다. 양 경우 모두 신고 시 프랑스 내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프랑스 내 출생증명서와 5년 이상의 상시적인 거주를 (residence habituelle) 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 사이트(service-public.fr)에는 거주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예를 들면 학적부, 재학증명서 등)

또한 프랑스는 만 18세에 도달하면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sup>53)</sup>. (국적의 자동취득 : Acquisition automatiqu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이 제도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보충적 출생지주의(principes complémentaires de jus soli)이다. 그런데 국적이 자

51) 프랑스 민법 제21-13-2조, 만 6세부터 프랑스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국가의 교육시스템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 21-7조 또는 제21-11조의 적용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은 성년이 되는 때에 제26조 내지 제26-5조에 근거하여 행정청에 신고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52) 프랑스 민법 제21-11조, 외국인을 부모로 하여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성년인 자는 프랑스 내에서 거소를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11세 이후부터 5년 이상 프랑스 내에서 계속적 또는 비계속적인 상시적 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전 제26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16세부터 국적 신고에 의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 부모의 자로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성년인 자녀의 이름으로 13세부터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8세 이후부터 프랑스에서의 상시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민법전 제1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적 혹은 신체적 상태의 장애로 인하여 자발적 표현이 방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필요하다.

53) 프랑스 민법 제21-7조, 외국적 부모의 자녀가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 그가 11세 이후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프랑스에 5년간의 상시적인 거주를 하였다면 성년에 도달하게 되는 그 날부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동 취득되는 것과 선천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중 속지주의가 선천적으로 국적을 부여(attribution)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보충적 속지주의는 후천적인 국적 취득(acquisition) 방식이다. 절차적으로도 프랑스 국내 신분증명서,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 국적을 증명하고 법원에 프랑스 국적의 사실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국적의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외국 국적만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프랑스 국적을 이탈<sup>54)</sup>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적신고에 의해 하는 이탈과 달리 처음부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충적 출생지주의는 프랑스 내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의 외교관 및 영사의 자녀<sup>55)</sup>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에 의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바. 행정청의 철회(Retraite)

### 1) 의 의

국적 취득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décret)을 취소하는 행위를 철회(retraite)라고 한다. 대부분 귀화와 회복에 대한 결정이 그 대상이다. 내무부 이민청 국적과가 내리는 결정으로는 허가(décision favorable)와 불허(décision défavorable en opportunité)가 있다.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용 불가(irrecevabilité)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 불허 요건이 사라지면 새로운 신청도 가능하다. 취소 결정은 무효와 마찬가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서류에 거짓(mensonge)·허위(fraude)이 발견되면 관보고시 후 2년 내에 취소될 수 있다. 이 철회결정은 반드시 참사원(Conseil d'État)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결정은 소급적 효과를 갖지만, 관보고시 이전에 취득한 권리들은 유효하다.

<sup>54)</sup> 프랑스 민법 제21-8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26조 이하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건 하에 성년에 도달하기 6월 전과 성년에 도달한 후 12월 내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당사자는 처음부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sup>55)</sup> 프랑스 민법 제21-10조, 민법전 제21-7조부터 제21-9조는 프랑스 내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의 외교관 및 영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민법전 제21-1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2) 대상

### (가) 귀화(naturalisation) 결정

프랑스 내 최소 5년간<sup>56)</sup> 합법적으로 상시 거주(résidence habituelle)하고 있는 일반 성인은 프랑스 사회에의 동화·언어 능력을 갖추고, 건전한 생활태도와 품행을 입증하면 일반귀화 신청을 통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합법적이라 함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의 경우 임시비자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였으나, 일반귀화는 이 경우를 명백히 제외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는 거주(résidence)와 주소(domicile)를 구분한다. 여기에서의 거주(résidence)란 직업적 이해관계 및 가족의 개념을 통틀어 의미한다. 직업(Insertion professionnelle)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와 근로소득, 그리고 납세증명서로 판단한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프랑스 국적이 거부될 수 있다. 수반취득<sup>57)</sup>도 가능한데, 자녀 역시 신청 시 적어도 5년은 프랑스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프랑스 사회에서의 동화능력(Assimilation à la communauté française) 및 프랑스 언어 지식도 입증한다. 여기서 프랑스 사회에서의 동화(l'assimilation)<sup>58)</sup>이란, 2010년 지침<sup>59)</sup>에 의하면 프랑스 공화국의 본질적인 원칙과 가치에 대한 수용을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프랑스

<sup>56)</sup> 프랑스 민법 제21-15조, Article 21-18, 21-19, 21-20을 제외, 신청인은 프랑스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sup>57)</sup> 프랑스 민법 제21-11조, 18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귀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신청 전 5년 동안 부모와 함께 프랑스에 거주한 경우에는 부모 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귀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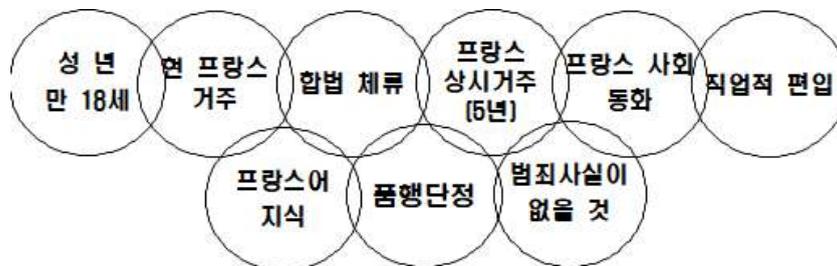
<sup>58)</sup> 프랑스 민법 제21-24조, 프랑스 공동체에의 동화, 특히 조건에 따라 프랑스 언어나 프랑스 역사, 프랑스 문화 및 프랑스 사회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의하여 동화를 증명하지 못하면 누구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평가기준과 방법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치는 데크레에 의하여 정해지며, 공화국의 필수적인 원칙과 가치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적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이러한 동화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당사자는 프랑스 시민의 권리와 의무헌장에 서명한다.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치는 데크레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헌장은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과 가치 및 상징을 의미한다

<sup>59)</sup> Circulaire du 27 juillet 2010, L'assimilation est "Une participation aux activités de la société française et l'adhésion tant à ses règles de fonctionnement qu'à ses valeurs de tolérance, de laïcité, de liberté et d'égalité"

사회,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시청에서는 교육안내 책자 <livret de citoyen>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면접심사 준비를 돕고 있다. 프랑스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 그래도 예외<sup>60)</sup>가 있기는 하다. 최소 15년간 프랑스에서 상시거주하고 70세 이상이 된 정치적 난민이나 무국적자들이다.

특히 귀화는 우리 국적법에 있어서의 「품행단정」<sup>61)</sup>과 같은 윤리·도덕적 규정<sup>62)</sup>(Moralité)을 두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에서는 「건전한 생활태도와 품행<sup>63)</sup>」(Bonne vie et mœurs)이다. 이는 공증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경시청과 영사관에서는 이에 대한 각 개인의 증명서(certificat de bonne vie et mœurs: CBVM)를 발급하고 있다.

<표 5> 프랑스 일반귀화 요건



60) 프랑스 민법 제21-24-1조, 프랑스 언어에 대한 습득 조건은 적어도 15년 이상 합법적이고 상시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무국적자와 정치적 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61)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단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소헌을 제기한 사안에서 타국의 사례들을 들며 합헌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선량한 도덕적 인격(good moral character)’을, 영국은 ‘선량한 인격(good character)’을, 프랑스는 ‘건전한 생활태도와 품행(bonnes vie et moeurs)’을, 일본은 ‘소행이 선량할 것(素行 善良)’을 규정하는 등 여러 입법례에서 귀화허가 요건 중 하나로 인격이나 품성과 관련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귀화제도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4헌바421)

62) service-public에서는 이 “건전한 생활태도와 품행”을 하는 자란 공공질서에 반하는 자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Cela signifie notamment que vous ne devez pas avoir été l’auteur de faits contraires à l’ordre public”

63) 프랑스 민법 제21-23조, 건전한 생활태도와 품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또는 민법전 제21-27조에 규정된 범죄를 행한 자는 누구도 귀화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귀화 데크레는 국참사원의 적합 의견 후에만 행하여 질 수 있다.

또한 귀화는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이 되는 경우<sup>64)</sup>와 기간이 불필요한 경우<sup>65)</sup>도 있다. 전자의 대부분은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에서 2년 이상 수학 후 학위를 받은 자들이 가능하며 후자는 난민, 프랑스 군대복무자와 유사시 동맹종사자, 특별한 공로를 한 자 및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민<sup>66)</sup>들이다.

참고로 귀화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과회신은 모든 필요한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하고 접수증을 즉시 발급한 후 18개월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귀화 신청시 적어도 10년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거주한 자에게는 12개월로 단축된다. 그리고 사유를 소명한 결정으로 한번 연장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이다.

#### (나) 국적회복(reintergration) 결정

국적회복은 과거 프랑스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경우 국적회복 요건과 절차가 귀화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있다면 프랑스 국적 회복은 일반귀화와 다름없는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sup>67)</sup>이 흥미롭다. 따라서 국적회복 접수 신청서 뿐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의 동화를 입증하기 위한 인터뷰, 어학 능력 입증, 상시 거주 등 모든 요건이 귀화절차와 동일하다. 또한 수반취득도 가능하다.

64) 프랑스 민법 제21-18조, Article 21-17에서 언급된 기간은 2년으로 단축된다.

1.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이나 대학에서 최고학부 과정을 2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2. 프랑스에 이익이 되는 재능이나 자질을 갖거나 가질 수 있는 사람
3. 사회, 과학, 경제, 문화 또는 체육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특별한 동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

65) 프랑스 민법 제21-19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 조건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프랑스 군대에서 실제로 군 복무를 이행하였거나 전쟁 시기에 프랑스 또는 연합군의 군대에서 복무하기로 계약한 외국인 5. 삭제 6. 프랑스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그의 귀화가 프랑스를 위하여 특별한 이익이 되는 외국인의 경우 귀화 데크레는 관계 장관의 이유보고서에 따른 국참사원(Conseil d'Etat)의 의견을 들은 후에만 적용할 수 있다. 7.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사무국 설립을 위한 1952년 7월 25일 법률 제52-893호의 적용에 의하여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

66) 프랑스 민법 제21-20조, 문화-언어에 있어서 전적으로 프랑스권에 속하는 자의 경우 즉 그가 프랑스어를 단일 공식언어로 하던가 프랑스어를 공식어 중의 하나로 하는 지역 국가의 주민인 경우,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경우 또는 프랑스어로 행해지는 교육기관에서 최소 5년간 교육을 받은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조건 없이 귀화할 수 있다.

67) 프랑스 민법 제24조와 제24-1조, 프랑스 국민의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회복은 데크레나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데크레에 의한 국적회복은 모든 연령에서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행하여진다. 데크레에 의한 국적회복은 귀화에 관한 요건과 규정이 적용된다.

## 1. 현행 국적법의 기본원칙

### 가. 엄격한 속인주의 vs. 완화된 속인주의

한국과 프랑스 국적법의 공통점은 부모 양계혈통주의에 의한 속인주의에서 출발한다. 양 국 모두 제정 국적법 시대에는 부계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를 표방하였으나,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와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구 확보의 목적을 위하여 모계 혈통에 의해서도 국적을 부여하게 된다.

#### 1) 한국 국적법 : 속인주의, 예외적 속지주의

그러나 속인주의를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혈통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 2 조 제 1 항 제①호)는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천명하면서도, 「출생 前(전)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역시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동법 동조항 제②호) 여전히 부계 혈통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동법 제 6 조 제 1 항 제①호)는 별도의 귀화 신청(간이귀화)을 하여야 한다. 대개가 한국에 거주하는 대만화교들인데, 이들은 프랑스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 속지주의에 의하여 출생 시부터 국적을 부여받을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동법 제 9 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 절차는 귀화절차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생략된다. 국적회복으로 인한 국민선서를 하고 증서를 수여받는 행사에 참여해야 하지만 귀화에서 필요한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는 생략된다. 이에 반해 프랑스 국적법은 프랑스 국민이었으나 현재는 외국인이라는 인식으로 국적회복 역시 거주 요건을 제외한 귀화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으며, 문화적·직업적·경제적·가족적 영역에서 프랑스와 명백한 연관을 가진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 2) 프랑스 국적법 : 속인주의, 이중 속지주의, 보충적 출생지주의

### (가) 속인주의와 이중 속지주의의 상호공존

프랑스의 경우에는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약 200여년의 이민 역사를 거치면서 2세대가 프랑스 태생이면 국적을 부여하는 이중 속지주의가 속인주의와 함께 동거하여 왔다. 프랑스 국적법에 의하면 양 원칙 모두 출생 시부터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프랑스 국적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 (나) 보충적 속지주의<sup>68)</sup>

뿐만 아니라 속지주의의 연장으로 보충적 출생지주의도 함께 공존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외국인 부모 밑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나 5년 이상 상시적으로 거주한 미성년자에게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진정한 법적 유대를 형성하는 국적의 원천은 부모나 배우자와 같은 가족적 연계(family link: jus sanguinis)와 출생 장소 혹은 오랜 거주 등 영토적 연계(territorial link: jus soli)로 구분을 한다. 이중 속지주의가 출생지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보충적 속지주의는 출생 장소(birth of place)와 오랜 거주(long term residence),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 원칙이다. 혹자는 이를 단순히 속지주의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sup>68)</sup> 프랑스 민법 제21-7조, 외국적 부모의 자녀가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 그가 11세 이후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프랑스에 5년간의 상시적인 거주를 하였다면 성년에 도달하게 되는 그 날부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다) 속지주의의 지속적인 확장

프랑스에서의 속지주의는 계속 진화를 하며 확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데크레에 의하여 프랑스 국적자의 형제·자매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적 취득에 있어 직계 뿐 아니라 방계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 나. 비호절차를 통해 본 무국적 방지 매카니즘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수국적 인정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국적선택 및 국적상실의 요건과 효과는 매우 달라진다. 그러나 양국 모두 가입한 1948년 세계인권협약과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면서 무국적자 감소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1) 한국 국적법 : 무국적자 방지

한국의 경우, 부모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동법 제2조 제1항 제③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동법 동조 제④호)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프랑스 역시 부모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국적국 법률에 의해 어떠한 국적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프랑스에 태어난 자에게(민법 제19조, 제19조 제1항) 출생 시부터 프랑스 국적을 부여한다.

또한 국적이탈 대상자를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법제 14조), 국적상실결정에도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법제 14조의 3) 무국적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

참고로 무국적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잠깐 소개해본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범위 안에서 해당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 외 난민법의 적용을 통하여 난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무국적자의 난민 지위와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고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프랑스 출입국관리법 : 무국적자의 체제적 수용

반면, 프랑스는 무국적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국적법에 수용할 뿐만 아니라 무국적 인정 절차를 별도로 인정하여 무국적자들을 체제 내로 적극 편입한다. 이 절차는 프랑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의 비호절차는 크게 난민인정(Réfugié), 보충적 보호(la protection subsidiaire), 무국적 인정(Apatride)으로 구분된다. 난민과 무국적자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동시에 혹은 별도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무국적 인정절차를 난민 인정절차와 별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무국적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참고로, 여기서의 보충적 보호<sup>69)</sup>란 난민의 지위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한국의 인도적 체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들 역시 프랑스 이민청 난민국에서 운영하는 오페라(l'Ofpra)에서 인정되면 최대 4년간의 체류자격을 얻으며, 사회보험 및 취업 등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국적의 취득

### 가. 국적 취득 방식과 취득효과

대한민국 국적취득 방식이 크게 출생·인지·귀화·회복에 의한 것이라면, 프랑스는 출생·귀화·회복에 의한 방식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법은 제1조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 국적법은 국적취득의 효과<sup>70)</sup>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국적취득의 출생과 귀화, 회복 절차는 앞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미성년자 인지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sup>69)</sup> La protection subsidiaire est une forme de protection par l'asile, attribuée à l'étranger qui ne remplit pas les conditions d'obtention du statut de réfugié.

<sup>70)</sup> 프랑스 민법 21-22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프랑스 국민의 지위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부담한다.

## 나. 미성년자 인지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국적취득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와 입양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가 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미성년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진다.(국적법 제 3 조 제 1 항) 그리고 입양은 외국인으로서 주소가 있는 자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즉 특별귀화의 경로로 취득된다.(국적법 제 7 조 제 1 항)<sup>71)</sup> 성년입양은 간이귀화의 대상이다.

반면 프랑스 국적법에서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가 입양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프랑스의 입양 방식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프랑스인에 입양되어 그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아동(일반 입양: Adoption simple), 둘째 개인이나 시설에 위탁되는 위탁아동(un enfant recueilli), 셋째 법적으로 출생 가계와 단절된 아동을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Adoption pleniere)으로 구분되는데, 세 번째의 경우가 한국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와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모두 법원에 신고절차를 통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한국 국적법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과 프랑스의 법적으로 출생 가계와 단절된 아동의 국적취득이 같은 신고절차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 국적법은 국적취득 효과를 신고 시로 규정하여 신고한 아동을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 아동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 부모의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형제·자매간 국적이 달라지는 경우(혼인신고 전후 태어난 형제·자매들을 의미한다)를 현장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 국적법은 신고 당시 ‘태어났을 때부터 프랑스인으로 고려’ 되기 때문에(II est considéré comme française dès sa naissance), 그리고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아동의 본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등 절차가 간편하다.

<sup>71)</sup> 성년입양의 경우는 법제6조 간이귀화의 대상이 된다.

참고로 단순입양 아동과 위탁아동은 입양 혹은 위탁으로 프랑스 국적이 바로 취득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입양아동과 위탁아동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적 출생지주의에 따른 국적자동 취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국적을 신청<sup>72)</sup>해야 하며 위탁아동의 경우는 3년의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 3. 한 · 프랑스 국적법 비교표

현재까지 다루어본 양 국의 국적법을 비교 ·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 · 프랑스 국적법 비교표>

<표 6>

	대한민국 국적법	프랑스 국적법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양계 혈통주의</li> <li>● 속인주의, 예외적 속지주의</li> <li>● 부부 및 가족 개별국적주의</li> <li>● 복수 국적의 제한적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양계 혈통주의</li> <li>● 속인주의, 이중 속지주의, 보충적 속지주의</li> <li>● 부부 및 가족 개별국적주의</li> <li>● 복수국적 용인</li> </ul>
무국적자의 국적부여 · 방지 · 비호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지주의 원칙을 보충하여 국적 부여</li> <li>● 국적선택, 이탈, 상실 및 상실결정 대상을 복수국적자로 한정</li> <li>● 난민법에 따라 비호절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지주의 원칙을 보충하여 국적 부여</li> <li>● 국적상실(이탈) 및 박탈대상을 복수국적자로 한정</li> <li>● 프랑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무국적 인정절차 제공</li> </ul>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과 상실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취득 신고(인지)</li> <li>● 국적재취득 신고</li> <li>●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li> <li>● 국적이탈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취득 신고 (혼인귀화, 프랑스계 직계후손, 프랑스인 형제 · 자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프랑스에서 태어나 거주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li> </ul>

<sup>72)</sup> 단순입양의 경우 국적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신청일에 아동은 미성년자(18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아동은 신청일에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양부모가 프랑스에 상시적인 거주지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입양이 해외에서 성립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프랑스 국내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보유 신고</li> </ul>	입양, 위탁아동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 시 프랑스 국적의 자발적 상실 신고 가능(신고 의무 없음)</li> <li>● 국적회복 신고(혼인으로 프랑스 국적 상실한 경우)</li> </ul>
미성년자 인지 · 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li> <li>● 신고 시 국적취득 (후천적 국적취득으로 분류)</li> <li>● 성년입양 : 간이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으로 출생가계가 단절된 아동을 입양하는 방식</li> <li>● 선천적으로 국적부여</li> <li>● 성년입양 없음 : 일반귀화</li> </ul>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 국적취득과 상실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일반/간이/특별)</li> <li>● 국적 회복</li> <li>● 국적 선택</li> <li>● 국적 이탈</li> <li>● 국적 회복</li> <li>● 국적 판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li> <li>● 국적 회복</li> <li>● 국적상실(자발적 국적이탈)</li> <li>● 제재적 성격의 국적상실</li> <li>● 국적박탈</li> <li>● 국적판정</li> </ul>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li> <li>●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li> <li>● 법령 준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 요건을 갖출 것</li> <li>●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li> <li>● 국어능력과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li> <li>●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민법상 성년일 것 (만 18 세)</li> <li>● 귀화 결정에 서명 시 프랑스 내 거주하고 있어야 함</li> <li>● 프랑스 내 거주 기간 최소 5년</li> <li>● 합법적 체류상태</li> <li>● 프랑스 사회에의 동화</li> <li>● 프랑스어 지식</li> <li>● 직업적 편입</li> <li>● 품행단정(Bonne vie et moeur)</li> <li>● 범죄기록이 없을 것</li> </ul>
간이귀화	있음(제6조) 거주기간 : 최소 3년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최소 2년	있음 거주기간 : 최소 2년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최소 4년
특별귀화 (우수인재)	있음(제7조)	있음

수반취득	있음(제8조)	있음 자녀의 경우 역시 국적 신청하는 부모와 적어도 5년 이상 함께 거주하여야 함을 명시
국적회복	귀화에 비해 완화된 요건과 절차 (제9조)	국적취득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
국적취득자 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있음(제10조)	없음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외국 취득의 경우 본국국적 자동상실 (제15조 제1항)이 되며, 상실신고 의무 있음</li> <li>● 비자발적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입양, 인지, 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국적 취득 시 6개월 이내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천적,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 되지 않고 복수국적 가능함, 단 본인의 명백한 의사(신고)로 국적이탈 가능</li> <li>● 외국 국적을 취득 후 1년 안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청에 국적이탈 신고하여야 함.</li> </ul>
국적상실 결정	있음	있음(국적상실결정과 국적박탈)
기타  국적법 집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방법: 본인 출석</li> <li>● 귀화허가 수수료 : 30만원</li> <li>● 서류 구비에 유의할 점 :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본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li> <li>● 귀화결정 시 신청인 성명이 원지음으로 결정되므로, 이후 한국식 성명으로 개명절차를 거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방법: 우편접수 (서류 미비 시 반송)</li> <li>● 귀화허가 수수료:</li> <li>● 서류 구비에 유의할 점 : 좌동</li> <li>● 국적신청 접수 시 변경하고 싶은 프랑스식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귀화결정 후 국적증서에 프랑스식 성명이 나옴(별도로 법원에 가서 개명신청할 필요없음)</li> </ul>

이상과 같이 프랑스 국적상실제도의 의미와 그 운용방법 그리고 양 국의 국적법을 간략히 비교·검토 해보았다. 한 국가의 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그 법조항만으로 다 이해될 수는 없다. 다양한 사례와 판례들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뚜렷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서라도 여기에서는 평소 느꼈던 국적상실제도 운영 관련 문제점들과 국민의 소리들, 그리고 신문 기사들을 소개하여 현행 한국 국적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현행 국적상실 신고제도 검토

### 가. 국적상실신고 기간제한과 의무이행 담보방안 마련

현행 국적법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하여 우리 국적법은 신고시기와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5년 국회에서도 홍미영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적상실신고 의무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해외에 있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국적상실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국가에서 명확한 후속조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수요자들은 신고의무를 간과하기 쉬웠으며, 동포비자나 국적회복 신청을 할 때 함께 처리해도 되는 부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만약 해외체류자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상실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국적상실 시기와 신고 시기 간격은 크게 존재할 것이며, 행정의 불안정성은 여전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 제한시기를 명백히 하여 정책수요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이 취업비자나 동포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는

시점에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제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외국국적 증명과 상실일 결정문제

최근 국적상실에 관한 여론이 환기되면서 출입국정책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고, 상실신고 기관을 기존의 체류사무소 이외에 공항·만에서도 접수하여 상실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여러 논의들이 있어왔다.

업무현장에서 국적상실 신고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엄격한 외국국적 증명 문제이다. 국적법 제 15조 3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 14조는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여권 사본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외국국적 취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초여권을 제시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역시 최초여권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 국적실무편람에서도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공통 사항 : 반드시 신고자(대상자), 부모의 한국명과 외국명의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여 출생한 곳과 출생당시 부모의 국적을 살펴서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

- 최초로 발급받은 해당국가 여권으로 국적상실처리 할 경우
  - 대사관의 최초여권 확인서 첨부
  - 신고인에게 법 제 15 조제 3 항에 대하여 안내
- 최초로 발급받은 해당국가 여권의 발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기관 국적상실자 통보 및 공항만 등에서 자체 발견 시 활용)
  - 현재 사용하는 여권 이외에 다른 여권을 소지하거나 또는 다른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
    - ▶ ① 소지한 여권 중 가장 오래된 여권의 발급일 또는 ② 최초 입국시 사용한 여권의 발급일 또는 ③ 해당국가 여권으로 최초 입국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

편람이 의미하는 바는 체류사무소에서는 최소한 최초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외부기관에서 국적상실자를 통보하거나 공항만 등에서 자체 발견 시 최초 여권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발견통보) 그러나 실제로 체류사무소에서 최초 여권을 보기란 어렵다. 최초 여권인가를 담당자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식적으로 각 대사관에서 이를 증명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최초 여권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출입국기록에 의거한 상실일을 결정하기도 어렵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볼 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대부분은 국적 취득 시 남편 성을 따른 외국 명으로 변경하게 마련이고, 또한 그마저도 이름이 긴 경우 이니셜만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등 성명이 일괄적이지 않다. 요약하면 신분변동이 매우 큰 상실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적취득일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증명서류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국적상실일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 국적법 역시 국적이탈 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외국 국적 취득일자와 근거 법조항이 명시된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모든 증명서류, 예를 들면 외국 여권사본이나 외국신분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적상실일 기준은 1년 내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외국적 취득일이며, 1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탈절차를 거치는데 그 효력 발생일자는 허가일이다.

따라서 국적상실 신고절차에 있어서 제출서류를 외국 국적취득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현재 소지한 여권을 기타 외국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하고, 이 경우 외국국적 상실일을 소지한 여권의 발급일로 결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실일과 신고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는 본인이 추후 국적상실일 정정절차를 통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안내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 다. 동일인 확인서 검토

국적상실 신고 절차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동일인확인서이다. 이 서류는 외국국적 취득증명서에 성명 변경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거나, 그 밖에 다른 공적 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입증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혼인으로 인해 남편 성으로 변경되거나 이혼판결문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면제될 수 있는, 보충적 서류이다.

동일인확인서<sup>73)</sup>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 1202 호, 2018. 12.18. 일부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하이코리아 민원안내에서도 이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대한민국에서의 인적사항과 외국 국적에서의 인적사항의 갭을 메꾸기 위하여 이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국적상실 절차는 이후 국적회복이나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이 서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간이귀화 시 중국동포의 경우 공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반국의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자는 공증 없이 4촌 이내의 친인척 2명에게 이를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실과 회복에 있어 동일인확인서의 문제는 다소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제출받는 동일인확인서 대부분의 경우는 시차로 발생한 생년월일과 성명의 불일치 때문인데, 이는 충분히 접수단계에서 확인가능하다. 만약 외국국적의 생년월일과 성명이 한국의 그것과 많이

<sup>73)</sup> 본 지침 제 5조 3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으로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기타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의 친척관계 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를 경우 친인척 2명에게 형식적인 확인을 받기 보다는 외국국적 취득에 대한 경위와 동기 등을 적시한 본인 진술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국적이탈 시 상세이유서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출입국기록과 체류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타인명의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친동생 2명에게 받은 동일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회복심사 중 한국 인적사항과 외국 인적사항이 매우 다르고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적발된 적이 있다. 친인척들은 신청인이 과거 타인명의 여권으로 출국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확인서에 서명하였던 것이다. 동포1세의 경우 공증된 동일인확인서 제출이 불가피하더라도, 국적상실과 회복에 동일인확인서는 생년월일과 성명의 차이가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인 책임 하의 진술서를 징구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생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후천적 “자발적” 취득 검토

국제사회의 특성 상 국적법의 충돌은 어디에서나 있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적법과 프랑스 국적법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2017. 8. 22 일자 유러포커스<sup>74)</sup>에 실린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다소 특정국의 상황이고, 글쓴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번 짚어볼 내용이다.

먼저 글쓴이는 프랑스 국적법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란 아이는 만 13세가 되면 부모가 아이의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고, 16세가 되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한다고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신고(déclaration)의 성격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법은 이를 후천적 그리고 프랑스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이는 부모에 의한 수반취득도 아니기 때문에 국적보유 신고를 통한 복수 국적 역시 보유할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하다.

74) 우스꽝스러운 한국국적법 : 프랑스 출생 자녀가 후천적 자발적으로 국적취득? <유러포커스>, 2017.8.22.

필자가 보기에 이 기사를 작성한 분은 프랑스 국적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 소위 보충적 출생지주의에 해당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déclaration) 역시 후천적 취득인 것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발적” 부분이다. 이 제도는 “자동적 취득”이기 때문에 우리 국적법 제 15 조(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에 해당되는가는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국적법에 대한 모든 이해가 불가능하고 특정국만 예외를 둘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미래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원들을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에 의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부모가 귀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거의 대한민국의 풍습과 언어를 익히고 있고 언제든 양국 간 그리고 더 나아가 프랑스어권의 많은 국가와의 교류협력에 있어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후천적 이중국적 허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

상기의 예와 같은 연장선에서 또 하나의 국민의 소리<sup>75)</sup>가 있다. 이는 군필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적 유학생이 병역을 이행 후 프랑스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사를 취득하였다. 프랑스는 건축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 국적법 상 복수국적 허용 불가로 인하여 프랑스 국적 취득 기회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게까지도 선택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들에게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의 길을 열어 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보다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

75) 군필자에게 후천적 이중국적 허용해주세요 < 청와대 청원> 2018-03-16

## 4. 국적박탈 관련 국가간 갈등 가능성에 대한 대비

또 하나는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기사 하나<sup>76)</sup>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 내용은 영국 정부가 2014년 18세 때 시리아에 건너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에 합류했다가 최근 귀국을 희망한 영국 청년 잭 레츠(24)의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영국·캐나다 이중 국적자였던 그가 이번 조치로 캐나다 국적만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중국적 관련 모든 국가의 법규범은 무국적으로 남겨지지 않는 경우에만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국이 재빨리 그의 영국 국적을 박탈함으로써 캐나다는 국적을 박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전망하였다고 한다. 국적에 관한 국제사회의 사례와 대응책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 5. 마치며....

국적상실제도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제언들은 현행 우리 국적법상의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개인과 국가의 연결을 의미하는 국적 문제는 과거 충성관계를 전제로 한 국가간 체제 안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단일 국적주의에서 복수국적 수용과 인정이라는 대세의 변화라든지, 미시적으로는 프랑스 내 대리모 논쟁<sup>77)</sup>에서 보듯이 다양한 차원에서 국적문제를 고민하여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형성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중요한 첫걸음은 국민의 합의와 동의에 바탕을 둔 혈통주의의 완화, 즉 복수국적자의 인정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한민족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한국의 다문화 세대를 새로운 국민으로 적극 유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sup>76)</sup> 英, IS 가담 청년 시민권 박탈 加 국적 남아...양국 미묘한 대립, (캐나다 한국일보, 2019. 8.19)

<sup>77)</sup> 프랑스가 외국에서 대리모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에게 프랑스 부부와 친자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자 유럽인권재판소가 직접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과 '사생활과 가정생활 보호 권리'를 내세워 프랑스의 협약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결국, 2014년 6월 26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의거하여, '대리모 출생 아이도 가계 출생 등록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 참고문헌

---

### 1. 국내 문헌

- 한명숙, 1980년대 프랑스 국적법 논쟁을 통해서 본 무슬림 이민자 문제 (2008)
- 안구환, 국적법상 국적의 선천적취득의 요건\_호적실무를 중심으로(2007)
- 김종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2018)
- 이철우 외 3인, 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2018)
- 민지원/권채리, 외국국적자의 국내출생자녀에 관한 보충적 출생지주의(2018)
- 김진영, 전간기 프랑스의 국적 정책 변화(2014),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2015)
- 박 단, 탈식민화와 새로운 프랑스 국민-알제리 전쟁 전후 알제리인의 프  
랑스 유입과 국적법 변화(2015)
- 강소휘, 프랑스 대리모 출산 합법화 논의
- 박선희, 프랑스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과 안보화(2018)
- 신은선, 프랑스의 법원행정관리기구 연구(2007)

### 2. 외국 문헌

- UNHCR, Handbook on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Geneva(2014)
- Elise Ralser, Le droit de la nationalité et des étrangers en schémas(2018)
- Fabienne Jault-Seseke, Sabine Corneloup, Sélogène Barbou des places,  
Droit de la nationalité et des étrangers(2015)
- Étinne Pataut, La nationalité en déclin(2014)

프랑스 외국인체류 관련 가이드 책자(Gisti), 「Le gui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2019)」

Vincent Tchen, Droit des étrangers(2011)